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축산물 행정처분 업소 사후관리 미실시

기 관 명 광주광역시, 광산구, 남구, 동구, 북구, 서구

내 용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의 정지,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.

따라서 행정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등의 이행결과를 보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·검사·수거 등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및 동구 등 5개 구에서 2014년~2016년까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한 관내 축산물판매업체,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4개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,

광주광역시(○○○○과) 및 동구 등 5개 구에서는 총 84개의 대상업소 중 24개 업소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실시한 반면, 나머지 60개 업소에 대하여는

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, 동구청장, 서구청장, 남구청장, 북구청장,
 광산구청장

[주의] 앞으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